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2명(가군 1명, 나군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으로 전환하며, 국방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5호 중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2022년 1월 30일”을 “2024년 1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644”를 “64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8”을 “6”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2022년 1월 30일”을 “2024년 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10. (생 략) <u>11.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 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 한 사항</u> 12. ~ 39. (생 략)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12. ~ 39.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 13.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1. ~ 13.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방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4. (생 략) 5. <u>국방기본정책서</u> 및 국방백서	제12조(국방정책실)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국방전략서</u> -----

의 작성·발간 6. ~ 38. (생략)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2년 1월 30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② ~ ⑥ (생략)	----- 6. ~ 38. (현행과 같음)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 ----- ----- ----- --- <u>2024년 1월 30일</u>-----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4</u>	<u>646</u>	+2
전문경력관	<u>8</u>	<u>6</u>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3